

특허청 *지식재산* **신시대**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전인

정부 3.0

경제혁신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과 장 박호형 사무관 이형원 042-481-5377
	2016년 4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4월 6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선심사¹⁾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 우선심사란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출원인이 하루라도 빨리 상표등록을 받아 영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등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신속히 받아야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추가금액을 납부하면 출원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는 일반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권리관계를 신속히 하여 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²⁾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제도는 일국에 상표를 출원하면서 보호받기 원하는 복수 국가를 지정하면 복수에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인데, 개별국에 각각 출원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WIPO의 국제사무국을 중심으로 다국가 1출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이 유사한제도로써 운영되고 있다.